

#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3
----------	------

제출년월일 : 2022. 11.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및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주민투표법 개정(2022.4.26.) 사항을 조례에 반영
-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및 주민투표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안 제3조)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조항 개정 (안 제8조)
-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주민투표 청구인 전자서명 도입 명시 (안 제8조 및 제10조)
- 청구인서명부 서명요청기간 및 보정기간 변경 (안 제8조 및 제10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
- 주민투표 야간 선거 운동 제한 시간 개정 (안 제18조)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22. 8. 24. ~ 2022. 9. 13.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 붙임5

방침결정문 : 붙임6

#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 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100일” 을 “9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 ·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등” 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 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10시”를 “11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설·대담에 있어서”를 “연설·대담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으로,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를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윤 충 오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김 민 정
	담당자 성명·전화	정 은 주 (행정 3445)

### 【별지 제1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3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산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수 : 명

안산시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안산시 및 동(○책중 ○권)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 (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7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불임 2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u>  <u>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u>  <u>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u>  <u>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u>  <u>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u>  <u>표권이 있다.</u></p>	<p><u>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u>  <u>부작성기준일 -----</u>  -----  ----- <u>관계법령에 따라</u>  ----- <u>외국인은 --</u>  -----.</p>
<p><u>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대</u>  <u>상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u>  <u>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lt;삭 제&gt;</u></p>
<p>1. 구 ·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  <u>분합에 관한 사항</u></p> <p>2. 구 ·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  <u>는 설정에 관한 사항</u></p> <p>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u>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u>  <u>한 사항</u></p> <p>4. 법령에서 정한 기금 이외의 각종 기  <u>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u>  <u>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u>  <u>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u></p> <p>5. 기타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u>들도록 한 사항</u></p> <p>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  <u>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u></p>	
<p><u>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 10조제3항</u>  <u>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u></p>	<p><u>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u>  <u>에 따른 ----- 법 제</u></p>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0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0조제2항에 따라 -----  
-----  
----- 90일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  
-----  
-----  
-----  
-----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 · 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등-----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시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 · 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 및 시의원이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②----- 생  
년월일을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안산시 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

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

서 전문성과 의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하

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

항개정 2016.6.7.]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

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

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

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신 설>

제13조(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  
동 해산한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

제2항에 따라 -----

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 제15조 (생 략)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계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제17조 (생 략)

-----  
-----  
-----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 11시-----  
-----  
---. ----- 연설·대담에  
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

#### 제19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0조(공표방법 등) -----  
-----  
-----  
-----  
-----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  
-----  
-----  
-----.

#### 제2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 현 행

### 【별지1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개정안

### 【별지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 사유>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직인)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안산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 산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 【별지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 산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세류지를 기재</li> <li>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 【별지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안산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직인)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 【별지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산 시 장				
※ 작성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세류지를 기재</li> <li>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 【별지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안 산 시 구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 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 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 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5호 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의 표 지 )

( ) 주민투표의 청구

###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수 : 명

안 산 시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 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안산시 및 동(○책중 ○권) 란에는 동·빈 단위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 (동번호, 호수 또는 충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제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6호 서식】

주민 투표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 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p>			
<p>*첨부서류: 관련자료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 【별지7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p>			
<p>*첨부서류: 증빙자료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li> <li>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 【별지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 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p>			
<p>*첨부서류: 관련자료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 【별지7호 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 )	
대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p>			
<p>*첨부서류: 증빙자료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73호
----------	--------

제안년월일 : 2022. 12. 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조문규정사항과 관련한 부적절한 예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변호사, 교수 등” 삭제 (안 제12조)

##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호 중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p> <p>① <u>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p> <p>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p> <p>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p> <p>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 <u>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u></p> <p>③ <u>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u></p> <p>④ <u>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1. 안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p> <p>2. 안산시 의회 의원</p> <p>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p> <p>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안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p> <p>2. 안산시의회 의원</p> <p>3. <u>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p> <p>-----</p> <p>-----</p> <p>-----</p> <p>-----.</p> <p>1.(개정안과 같음)</p> <p>2.(개정안과 같음)</p> <p>3. <u>주민투표</u> -----</p> <p>-----</p> <p>4.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u>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고 인정되는 자</u></p> <p><u>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의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u></p> <p><u>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항개정 2016.6.7.]</u></p> <p><u>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u></p> <p><u>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 할 수 있다.</u></p> <p><u>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